

■ 본인이 아래와 같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출기한 내 필히 소명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시기 바라며, 제출기한 내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, 소명이 불가한 경우 당첨된 주택에 대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정당/예비 당첨자 서류 제출 예약 안내

-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정부방침에 따라, 당첨자 서류제출을 "홈페이지 온라인 예약"을 통해 진행합니다.

당첨자			예비 당첨자		
서류제출 예약기간	4월 27일(화) ~ 5월 1일(토)	홈페이지 예약	서류제출 예약기간	5월 16일(일) ~ 5월 18일(화)	홈페이지 예약
서류제출 기간	5월 2일(일) ~ 5월 7일(금)	건본주택 (10:00 ~ 16:00)	서류제출 기간	5월 19일(수) ~ 5월 21일(금)	건본주택 (10:00 ~ 16:00)

■ 제출장소 검단신도시 이미지 퍼스트포레 건본주택(인천시 서구 원당동 329번지)

■ 유의사항

- ※ 모든 구비서류는 **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4.09)일 이후 발행분**에 한하며, 모든 서류는 "상세 표기"로 발급(세대주와의 관계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, 과거 전입사항 등)
- ※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제한사항 및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을 진행하며, 사전 서류 접수기간 내 자격확인을 진행한 당첨자만 계약 진행이 가능 하오니,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또한, 계약금 입금 후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체의 환불 조건 및 절차(환불기간, 이자 미지급 등)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- ※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어 소명이 불가한 경우 '계좌 부활 요청서(필요서류 : 신분증)'를 작성하셔야 청약통장 부활이 가능합니다.
- ※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'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·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외의지역은 6개월, 위축지역은 3개월(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 동안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
■ 입력 및 가점산정 착오의 경우

구분	부적격 예상 사유	필요서류
일반공급	재당첨제한 및 최근 5년 이내 당첨에 해당할 경우	소명불가
	세대원이 청약한 경우	
	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시 무주택 인정하나,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는 경우	
	주택 소유 수 입력 오류 경우 (2주택자)	
	1순위(당해)신청 - 인천시 2년 미만 거주 경우	

■ 공통사항

	부적격 예상사유	필요서류
무주택기간 착오	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 산정의 경우	혼인 관계 증명서
	주택 양도일이 상이한 경우	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등
주택소유	소형 저가주택의 경우(특별공급 적용불가)	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 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,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
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	
부양가족 수	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	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

※ 부적격 예상사유에 따라 상기 필요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소형 저가 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
※ 상기 사유 외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당첨자에 해당 될 수 있으니 대표번호(1899-1482)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